

의안번호	2202800
의 퇴 인	이만희의원
회 답 일	2024. 8. 30.
추 계 번호	24B278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점검하고,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300만원, 2030년 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300만원(연평균 1,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안 제14조의2제7항) -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 점검	3	3	3	3	3	13	3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교육(안 제14조의5)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작	40	—	—	—	—	40	8
추가재정소요	43	3	3	3	3	53	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 신설(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¹⁾ 에 따라 <u>분리 신고</u> 를 받은 경우 <u>현장조사</u> 를 <u>실시</u>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2	안 제14조의2 신설(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함)을 <u>직접 설치·운영</u>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u>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u>하여야 함(제1항)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u>안전관리 준수사항</u> 및 제8항에 따른 <u>허가 및 신고기준</u>을 지키고 있는지 <u>여부</u> 등을 <u>점검</u>할 수 있음(제7항)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4조의3 신설(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고위험 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음(제3항)</u> 제1항에 따른 고위험가축 병원체 취급시설 등의 폐쇄 등의 절차 및 신고, 제2항에 따른 이행 계획 제출 및 그 이행, 제3항에 따른 폐기 또는 이관 등 처리 절차 및 <u>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4항)</u>	재량규정
4	안 제14조의5(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교육)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제1항) <u>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u>	의무·재량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4조제4항 신설(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가 접수되고 관련 문제 발생 시에만 국립가축방역기관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²⁾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기본경비 내에서 출장비 등 집행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안 제14조의2 신설(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	• 미대상 —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등(제1항)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기인증 취급시설* 중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13개 기관**의 취급시설 관리주체(질병관리청→검역본부) 이관 예정으로 신규 설치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기인증시설: 질병관리청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로 인증받은 생물안전3등급시설

1) 안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등) ① 신고 대상 가축, 사료, 동물·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이하 “고위험 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 13개 기관: 11개 동물위생시험소(서울·경기·강원·세 종·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2개 수의과 대학(건국대, 전북대)
		○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 참고 -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13개소) 점검(제7항)
3	안 제14조의3 신설(고 위험가축전염병 병원 체 취급시설의 허가취 소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폐쇄명령을 받은 취급시설이 기한 내에 고위험 병원체 폐기하지 않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직접 폐기하는 경우, 폐기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폐쇄명령을 받게될 취급시설, 해당 시설에 보유한 고위 험 병원체 수량 및 폐기 비용을 예측이 곤란하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4	안 제14조의5(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교육)	○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 참고 - 교육 프로그램 제작비용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2) 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④ 가축 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
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
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의4(가축방역·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가축전염병 관리 현황

- 현행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종류) 가축전염병은 전염성과 피해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가축전염병(68종)으로 지정
 - 세균(21종): 우폐역, 탄저, 브루셀라병 등
 - 바이러스 및 프리온(47종): 구제역, 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 [참고자료] 법정 가축전염병(68종) 참고
 - (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표 2] 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

구 분	분리신고	수입허가
관리대상	법정가축전염병 68종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 약 620종
내용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하는 경우 국립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 수입금지,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시 수입 허가
처분	벌금 3백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법조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검사, 폐기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³⁾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생물테러 목적, 국민건강 위험 축산업

3)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영향 등을 검토 후 내·외부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지정할 예정(∼’24.11월)⁴⁾

○ (향후 관리체계) 병원체 안전사항 및 취급시설 관리체계 신설

[그림 1]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

구분	현행	개정(안)
제도	분리신고 의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 분리·분양·이동·폐기 신고 취급시설 이용 의무 취급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폐쇄 신고 취급시설 안전관리 준수사항 시설 허가취소, 폐쇄·운영정지
	수입허가	취급자 기준 취급자 교육 의무 수입허가
벌칙	분리 미신고(3백)	분리·분양·이동·폐기 미신고(1년/1천)
	수입허가 위반(3년/3천)	취급시설 운영 미허가·미신고(1년/1천) 수입허가 위반(3년/3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

4)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지정안 예시는 다음과 같음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지정안 예시(26종)>

법정전염병(세균)			법정전염병(바이러스 및 프리온)	
제1종	제2종	제3종	제1종	제2종
우폐역	탄저, 브루셀라 병(2종), 큐열, 비저	야토병	우역, 구제역, 가성우역, 블 루팅병, 리프트계곡열, 림피 스킨병, 양두, 산양두, 수포 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아 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뉴캐슬병, 고병 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 뇌염, 광견병
세균성 질병 병원체 6종			바이러스성 질병 병원체 20종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26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

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점검(제7항(안 제14조의2제7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보유·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에 대해 안전관리 및 허가·신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13개 기관의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비용에 대해 추계
 - (점검대상 시설 수) 13개 기인증시설
 - 질병관리청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로 인증받은 생물안전3등급시설⁵⁾ 13개소
 - 이때,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점검비 단가) 1개소당 192,690원
 - 2인×1일×근무지외출장여비 96,480원*
 - * '23년 점검 출장여비 평균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점검비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점검횟수) 연 1회 점검
- 추계결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점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점검대상 시설 수 (A, 개소)	13	13	13	13	13	—
점검비 단가 (B, 천원/개소·회)	193	193	193	193	193	—
점검횟수(C, 회)	1	1	1	1	1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3	3	3	3	3	1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음압으로 밀폐돼있어 감염성물질을 외부 유출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11개 동물위생시험소(서울·경기·강원·세종·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 2개 수의과대학(건국대, 전북대)

다.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교육(안 제14조의5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 취급자로 하여금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병행 운영 예정
 - 이 중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고위험 병원체 취급자로부터 교육수수료를 납부받아 실시할 예정이므로 강사료·교재인쇄비·교육장 임차료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개발 비용에 대해 추계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비) 개발비 1식 4천만원
 - 생물안전3등급시설 사용자교육(온라인) 온라인 콘텐츠 개발비⁶⁾ 적용
 - 이때, 2026년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 1개 과정을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위험 병원체 취급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안전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고위험 병원체 취급 안전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개발	40	—	—	—	—	4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인건비 31.6백, 경비 3백, 일반관리비, 1백, 이윤 0.7백, 부가세 3.6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설치대상 및 설치시설 유형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법정 가축전염병(68종)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가축전염병(68종)

세균(21종)			바이러스 및 프리온(47종)		
제1종	제2종	제3종	제1종	제2종	제3종
우폐역	탄저	닭마이크로플라스마병	우역	소해면상뇌증	소유행열
	기종저	부저병	구제역	돼지오제스키병	소아까바네병
	브루셀라병	돼지단독	가성우역	돼지일본뇌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결핵병	돼지위축성비염	블루텅병	돼지테센병	소전염성비기관염
	요네병	야토병	리프트게곡열	양해면상뇌증	소류코시스
	큐열		럼피스킨병	말전염성빈혈	소렙토스피라병
	비저		양두(산양두포함)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돼지전염성위장염
	구역		수포성구내염	동부말뇌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말전염성자궁염		아프리카마역	서부말뇌염	돼지유행성설사
	추백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베네수엘라말뇌염	닭뇌척수염
	가금티푸스		돼지열병	광견병	닭저염성후두기관염
	가금콜레라		돼지수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닭전염성기고나지염
	타이베리아병		뉴캐슬병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마력병
	바베시아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닭전염성에프(F)낭병
	아나플라즈마			마웨스트나일열	토끼출혈병
				돼지인플루엔자	토끼점액종증
				낭충봉아부패병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